(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 Sor.7/2568 호

투자위원회 고시 제 9/2568 호에 따른 투자촉진 업종 유형 개정(수정 및 추가)

2022 년 12 월 8 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 9/2565 호『국가 발전에 중요한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방안』에 따라, 외국 기업과 태국 기업 간의 경쟁에 균형을 조정하고, 국제 무역 조치로 인한 위험과 환경 영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위원회는 불기 2520 년(1977 년) 투자 촉진법 제 16 조 및 그 개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촉진 대상 사업은 투자촉진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 소유권 취득이 허가되지 않는다. 단, 지난 15 년간(2011 년~ 2025 년) 동일한 법인으로 투자 촉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3 개 이상 보유하고, 프로젝트 승인 단계 기준 투자금이 50 억 바트(토지비용과 운전자본 제외) 이상인 기존의 투자 촉진자는 예외로 한다.
   - Activity 5.4.9 비철금속 압연, 인발, 주조 또는 단조
   - Activity 5.4.11.2 철강 제품 또는 철강 부품 제조
   - Activity 5.4.11.4 산업용 금속 제품 및/또는 금속 부품 제조
   - Activity 5.4.11.5 산업용 금속 제품 및/또는 기타 금속 부품 제조
   - Activity 6.2 산업용 화학 제품 제조
   - Activity 6.4.1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 및 부품 제조
2.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촉진 대상 사업은 태국 국적의 개인이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단, 국경지역 경제특구(SEZ) 내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 Activity 9.8 가방, 신발, 천연 가죽 제품 또는 인조 가죽 제품 제조
   - Activity 9.12 가구 또는 가구 부품 제조
   - Activity 9.14 인쇄물 제작
3. 이 고시는 2025 년 9 월 1 일 이후 제출된 투자촉진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4. 1 항과 2 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프로젝트 중, 이 고시 발령일부터 2025 년 8 월 31 일 사이에 투자촉진 신청서를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촉진 승인 결정 수락 기한 연장과 촉진증 발급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

고시일 2025 년 7 월 22 일

Pichai Chunhavajira

(Mr. Pichai Chunhavajira)

부총리

투자위원회 의장